

## 판결문의 가독성에 대한 연구\*

고 민 조

박 주 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인간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범들을 언어를 통해 규정한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그리고 EU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하고, 법률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률텍스트를 쉽게 작성하기 위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 대상으로, ‘법령용어와 법률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전문용어가 포함된 과학 및 예술 글’을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의 6개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지만,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은 여전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전체논의에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판결문, 가독성, 법률텍스트, 법령용어, 법률문장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SNU Brain Fusion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되었음.

† 교신저자 : 박주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880-9050, E-mail : jooypark@snu.ac.kr

### 들어가는 말

인간은 안전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범들을 언어를 통해 규정한다.<sup>1)</sup>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들이 국내·외 연구<sup>2)</sup>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카우프만(Kaufmann Arthur)은 “법률가들의 언어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지 않고(직관할 수 없고) 따라서 대중적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미국의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Fred Rodell)은 법률언어가 법률가에 의해 작문되지 않는다면 법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비난을 했다.<sup>4)</sup>

1) 이러한 관점은 이미 오래 전 데이비드 흄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그는 법이 언어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법을 언어형식으로 파악했다. 데이비드 흄은 법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 ‘법이 언어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견해와 ‘법이 언어에 의해서만 구성되었다’는 두 견해를 주장하였다. 카우프만(Kaufmann Arthur)은 전자의 견해는 동의하지만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우프만 아서(Kaufmann Arthur), 심현섭 서울대학교법학 58·59합(1984.10) 203-216면. 206면 재인용.

2) 미국에서 정부 계약 문서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 평균 53.6%의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법과대학 학생의 경우 평균 65.6%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Joseph Kimble, *Answering the Critics of Plain Language, The Scribes Journal of Legal Writing* Vol. 5 (1994-1995).

국내에서 2001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87.1%가 어렵다고 응답하여,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소한 전문용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70.4%), 다음으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므로’(22.0%)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법률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권위적이고 딱딱한 어투 때문’이 가장 높았으며 (49.3%), 다음으로는 ‘내용이 모호하여 불명확하므로’가 높게 나타났다(19.4%). 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그리고 2006년 성인 남녀 846명을 대상으로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7%는 현행 법령 용어와 문장이 어렵다고 느꼈으며,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61.9%),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현이 많아서(48.5%),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7.4%),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20.0%)로 나타났다. 김기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정비기준 2007 중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06. 1면; 이와 함께 정책 및 법령 용어 순화정비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인들은 정책 및 법령 용어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으며(92%), 부정적인 어감(13.1%), 모호한 용어(10.3%)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각 법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다.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에 수록된 이상돈, 형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 개선방향; 김동훈, 상사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종영, 행정법 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천, 양관상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있음.

3) Kaufmann Arthur, 심현섭 서울대학교법학 58·59합(1984.10). 203-216면. 203면.

4)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프레드 로델

미국, 영국 그리고 EU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이 법령용어<sup>5)</sup> 및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과 관련 된 특정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법률텍스트<sup>6)</sup>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언어 사용하기 운동’(Plain Language Movement) 또는 ‘알기 쉬운 영어 사용하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을 진행해 왔다.<sup>7)8)</sup>

미국에서는 1978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알기 쉬운 영어 사용하기’(plain English)를 발령한 이후에 정부 문서나 규칙을 ‘알기 쉬운 언어’(plain language)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클린튼(Clinton)

대통령이 1993년과 1998년에 각각 대통령명령 제12866호와 대통령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을 발령하였다.<sup>9)</sup> 최근에는 정부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국가 경제 체제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바마(Obama)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대통령명령 ‘제13563’을 통해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부 의사소통(Clear Government communication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and use)”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0)</sup>

국내에서도 법률텍스트에서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1)12)</sup>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지음 | 이승훈 옮김 | 후마니타스 펴냄 p189.

- 5) ‘법률용어’와 ‘법령용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특별한 기준이나 차이를 두고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용된 논문에서 쓰인 단어를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법령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 6) 본 논문에서 ‘법률텍스트’라는 용어는 이은희의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인 ‘제도적, 활동적 영역에서 설정된 개념’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판결문, 법조문 그리고 공소장 등 법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들이 포함된다. 이은희 텍스트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 방향, 텍스트언어학, 2009, 38면.
- 7) plain language가 plain english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전자의 용어를 사용하며, 영국에서는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8) 김현희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법령 및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체계를 쉽고 정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9) “Background: Plain Writing Legislative History, 2007-2010”, 2010, Irwin Berent, Plain Writing Association

10) <http://www.plainlanguage.gov/pLLaw/>

11) 한국법제연구원 편,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에 수록된 이상돈, 형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동훈, 상사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종영, 행정법 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천, 약관상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있음.

12)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훈동과 이주일은 “법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이어야 한다. 즉 보통 시민이면 누구나 법률문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률문장은 대단히 어려워서 시민들은 물론 전문 법조인조차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을 만들어 개별 법률들을 대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sup>13)</sup>, 2006년부터 2014년 9월 기준 1,05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29건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 안은 한문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 또는 영어 등 번역체 문장을 우리식의 문장으로 바꾸는 등 문장구조를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 구시대적 한문투의 용어, 일본식 용어(특히 훈독어) 권위주의적 용어의 순화 등으로 한자어를 순화시키고 있습니다.”<sup>14)</sup>라고 명시하였다.

법률텍스트를 개선하고 순화하는 데에 바탕이 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텍스트가 더 이상 법조인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법률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보다 확

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인’인 배심원은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판단을 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을 대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12명 중 1명이 ‘모두 이해했다’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대부분 이해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절반 정도 이해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다.<sup>15)</sup>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난해한 단어와 복잡한 문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참여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의 상황에서 일반인 배심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07년 개정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판결문과 같이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가 있다.<sup>16)</sup> 이는 법률텍스트가 법률전문가들의 언어이며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명확한 문장으로 된 법률에 대한 욕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사실상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훈동·이주일. 「현행관련 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9면.

13)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통계 국회제출 법안처리현황 위원회 2014년 9월30일 기준.  
14) 김종두(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00.11).19면.

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 ral/24515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 ral/245151.html) 배심원 설문조사 분석 (2007.9.10. 시행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 사법정책실).

16)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자면,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의 특성 이해하기’,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대립되는 주장의 정당성 평가하기’, ‘판단의 취지와 시대적·사회적 의미 파악하기’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8. 37면.

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본인소송<sup>17)18)</sup>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에 대한 본인소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원고, 피고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47.0%였는데 반해, 2009년에는 44.9%로, 2012년에는 44.2%로 감소하였다.<sup>19)</sup>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액사건에서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0.5% 미만으로 매우 저조<sup>20)21)</sup>하다는 점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인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서식을 간이화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된 서식(plain language form)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함께 판결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상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텍스트 중 판결문에 대한 가독성을 알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판결문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간의 사건을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법률텍스트이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결속구조<sup>23)24)</sup>가 지켜지지 않으며, 심지어 판결문의 문장 중 실제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 해석의 의미가 상반된 문장도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25)26)</sup> 사법

- 17) 박우동,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본인소송과 그 문제점”, 사법행정, 한국사법 행정학회, 1981, 91면
- 18) ‘본인소송’은 ‘당사자 본인소송’이라고도 불리는데 판례에서는 이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에서는 ‘당사자 본인소송’이라고 쓰고 있고, 대법원 2003. 7.11. 선고 2001다7858 판결; 대법원 2003. 3.25. 선고 2001다84480 판결에서는 ‘본인소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19)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2년, 531면.
- 20) 전계서 1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1년, 546면
- 21) 이형근 미국의 본인소송의 증가와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미국의 본인소송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 사건의 성질, 나홀로 소송의 경향이라고 하였다.

- 22) 이외에도 판결문의 기능으로는 상급법원이 원심재판의 판단에 대해 심판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기능, 판결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기능 등이 있다(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사법연수원, 2006 11면).
- 23) 보그란테/드레슬러(1982)의 텍스트성에 대한 7가지의 기준인 ‘결속구조(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중 ‘결속구조’, ‘응집성’, ‘수용성’, ‘정보성’, ‘상황성’을 토대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 24) 김광해의 논문에서는 결속구조(cohesion)을 ‘텍스트 표층을 구성하는 요소들, 곧 문법적 의존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274면
- 25) 김광해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294-295면.
- 26) 장소원은 법조문, 판결문 그리고 기타 법조인이 작성한 공적 텍스트를 어휘선택, 문법요소의 사용, 문장의 구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상황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법률텍스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장소원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부 자체적으로도 판결문 작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sup>27)</sup>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령용어와 법률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전문용어가 포함된 과학 및 예술 글’, ‘일반인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비교하여 판결문을 일반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판결문이 작성되어야 할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단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법령용어와 문장은 쉽고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명확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sup>28)</sup> 기존의 판

결문들이 난해한 단어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문을 사용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9)</sup>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에 개정된 수정 지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2006년 수정 지침에 따른 변화를 연구 2에서는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 법관세미나’에서 제시한 ‘민사판결문 작성 방향’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하였다.<sup>30)</sup> 연구 1은 2개의 세부연구로 나뉜다. 연구1.1은 형사판결문과 과학 및 예술텍스트를 비교하였고 연구1.2에서는 민사판결문과 과학 및 예술텍스트를 비교하였다.

## 연구 1

### 연구1.1

준 보완방안 연구 2007 11면; 오경미, 법관세미나 간결한 민사판결서를 위한 체제와 문장 재판이론과 실무(1), 2면 2010; 또한, 법제처는 법률용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용어의 민주화, 용어의 평이화, 용어의 명확화, 용어의 표준화를 기본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박영도·정언학, 법령순화정비사례(1), 2000, 14면 헌법의 경우에도 ‘명확성’,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 ‘간결성’, ‘문법상이 정확성’, ‘우리말에 의한 표현’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2-33면.

29) 배종대 형법총론 개정판, 홍문사, 1995. 40~51면.

30)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 법관세미나’에서는 민사판결문의 작성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간결한 민사판결서를 위한 체제와 문장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1) 법관세미나 자료, 사법연수원, 2011.

27) 면.

27) 2001년 사법연수원은 종전 방식에 의한 판결문 작성방법을 교육받아 쉬운 판결문 작성요구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사재판 실무 책자 인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으며, 이 교재를 실무에서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현직 판사들에게 배포한바 있다.

대법원은 1991. 2. 7.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정하여 판결서 작성을 법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간이화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1998. 8. 20.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하였다.(대법원 1991. 2. 7. 송무심의 제9호, 대법원 1998. 8.20. 송무심의 0410-132 참고).

28) 한국법제연구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에 재학생 총 68명(남자: 37(54.4%), 여자: 31(45.6%))이 참여했고, 이 중 법학을 공부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7명)을 제외한 61명(남자: 33(54.1%), 여자: 28(45.9%))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자료

연구1.1에서는 총 4개의 형사판결문과 학술지에 게재 된 ‘과학’ 및 ‘예술’ 텍스트를 비교하였다<sup>31)</sup>. 비교자료로 쓰인 형사 판결문<sup>32)</sup>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 전과 2006년 후에 작성 된 판결문 중 각각 무작위로 10개의 판결문을 선택하였고, 예술텍스트와의 양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1500(±10%)자 내외의 글자 수를 포함하는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각각 2개씩 선택하였다<sup>33)</sup>. 판결문을 2006년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8년 8월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이 제정 된 바 있고, 2006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판결서 간 이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각

31)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에 대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비교 텍스트로서 전문용어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들을 비교텍스트로 선정하였다.

32) 87고단 2570, 1996. 3.21. 선고 95고합1192, 2008고단632, 2010.11. 8. 선고 2010고합231

33) 판결문을 각 2개씩 선택한 이유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각 2006년 이전과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을 읽고 난 뒤, 앞서 언급한 6개 영역과 관련한 이해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려 하였다. ‘과학’ 및 ‘예술’ 텍스트의 선정 방법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과 예술 관련 논문 중 글자수가 1500(±10%)자 내외의 논문을 각각 5개씩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3명의 대학원생이 ‘과학’과 ‘예술’ 텍스트 각각 5개를 읽고 난이도를 10점 척도에 평가하였고, 이 중 ‘상하’수준(7-8)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 결 과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4.1, 표준편차 0.1)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3.5, 표준편차 0.1), 과학(평균 3.7, 표준편차 0.9) 그리고 예술 텍스트(평균 3.6, 표준편차 0.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쟁점이 더 명확하다고 응답하였다(2006년 이전:  $p < .001$ ,  $t(60) = 5.2$ ; 과학:  $p < .001$ ,  $t(60) = 3.7$ ; 예술:  $p < .001$ ,  $t(60) = 4.7$ ).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평균 응답률<sup>34)</sup>(86.9%)이 가장 높았으며, 과학 텍스트(65.6%)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텍스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59.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간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3.8, 표준편차 0.3)

34) ‘평균응답률’은 2006년 전에 작성된 두 개의 판결문(2006년 전1과 2006년 전2)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한 값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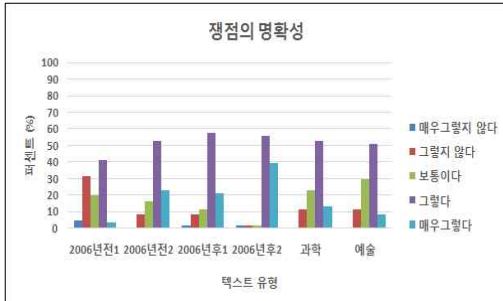


그림 1.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 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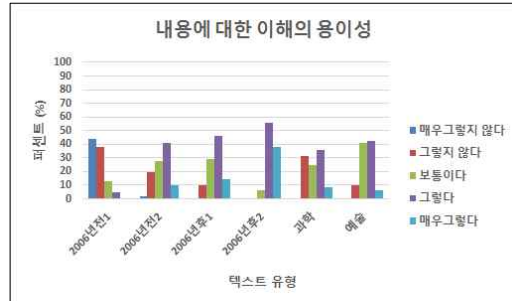


그림 3.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2.2, 표준편차 0.2), 그리고 예술 텍스트(평균 3.3, 표준편차 0.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간결하다고 응답하였다(2006년 이전:  $p < .001$ ,  $t(60) = 15.3$ ; 예술:  $p < .001$ ,  $t(60) = 3.1$ ).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70.5%),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18.9%)(그림 2 참조).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4.0, 표준편차 0.2)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2.6, 표준편차 0.1), 과학(평균 3.2, 표준편차 1.0) 그리고 예술 텍스트(평균

3.5, 표준편차 0.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2006년 이전:  $p < .001$ ,  $t(60) = 13.9$ ; 과학:  $p < .001$ ,  $t(60) = 5.1$ ; 예술:  $p < .001$ ,  $t(60) = 4.5$ ).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에 대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평균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77.0%), 다음으로 예술텍스트(49.2%)가 높게 나타났다.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27.9%로 가장 낮았다(그림 3 참조).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3.6, 표준편차 0.3)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2.8, 표준편차 0.0), 과학(평균 2.5, 표준편차 1.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용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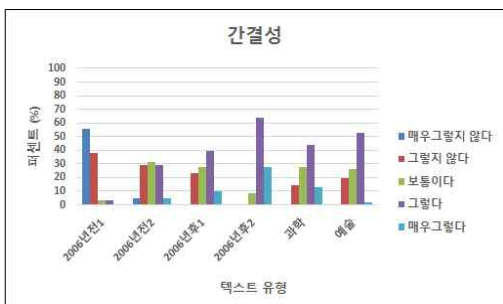


그림 2. '간결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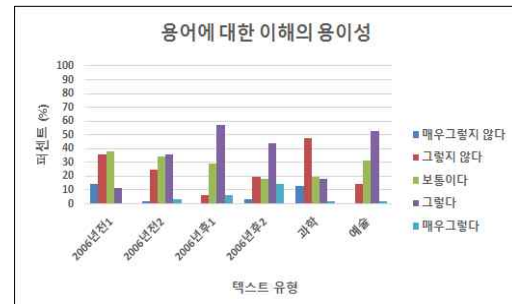


그림 4.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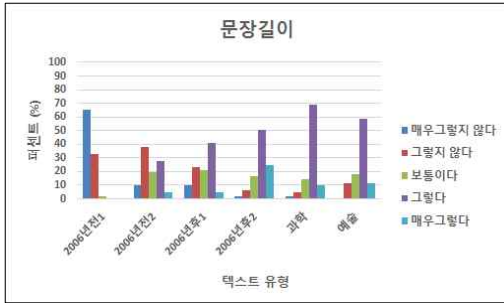


그림 5.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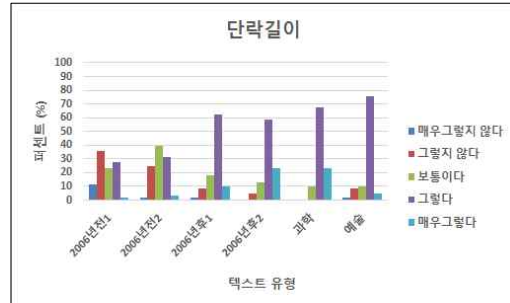


그림 6.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형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2006년 이전:  $p < .001$ ,  $t(60) = 7.2$ ; 과학:  $p < .001$ ,  $t(60) = 8.5$ ).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61.5%), 과학텍스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19.7%)(그림 4 참조).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3.5, 표준편차 0.1)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2.1, 표준편차 0.4) 보다 문장길이가 적절하다고 하였지만, 과학 텍스트(평균 3.8, 표준편차 0.7)와 예술 텍스트(평균 3.7, 표준편차 0.8) 보다 문장길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006년 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60.6%)은 과학텍스트(78.7%)와 예술텍스트(70.5%) 보다 낮았지만

(60.6%), 2006년 전에 작성된 판결문 보다 높았다(16.4%)(그림 5 참조).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도 문장길이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3.9, 표준편차 0.1)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형사판결문(평균 2.9, 표준편차 0.1)보다 단락길이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과학텍스트(평균 4.1, 표준편차 0.6)와 예술 텍스트(평균 3.7, 표준편차 0.8) 보다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2006년 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77.0%로 과학텍스트(90.2%)와 예술텍스트(80.3%) 보다 낮았지만, 2006년 전에 작성된 판결문보다 높았다

표 1. 형사판결문의 수정사항에 관한 평균 응답

형사판결문에 대한 수정사항	그렇다(N/%)	아니다(N/%)
쟁점이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6(42.6)	35(57.4)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5(90.2)	6(9.8)
용어가 좀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47(77.0)	14(23.0)
문장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51(83.6)	10(16.4)
단락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4(39.3)	37(60.7)

(32.0%)(그림 6 참조).

형사판결문의 수정 방향에 대해, ‘쟁점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와 ‘단락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의 비율이 ‘그렇다’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및 ‘용어가 좀 더 쉬워져야 한다’ 및 ‘문장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한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렇다’의 비율이 ‘아니다’의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내용:  $\chi^2(1)=39.4, p<.001$ ; 용어:  $\chi^2(1)=17.9, p<.001$ ; 문장길이:  $\chi^2(1)=27.9, p<.001$ ).

정리하면, 2006년도 이후에 작성된 2개의 판결문이 2006년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 보다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쟁점의 명확성’,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지’,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의 비율이 과학이나 예술텍스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형사판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판결문에 대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용어가 좀 더 쉬워져야 한다’, ‘문장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점에서 형사판결문이 보다 간결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 재학생 56(남자: 37(66.1%), 여자: 19(33.9%)명 중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3명)을 제외한 53명 (남자: 34(54.1%), 여자: 28(45.9%)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자료

총 4개의 민사판결문<sup>35)</sup>과 과학 텍스트 그리고 예술 텍스트를 포함하여 총 6개의 글을 비교하였다. 민사판결문의 경우, 2006년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총 10개의 판결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이중 과학과 예술텍스트와의 양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2500(±10%)자 내외의 글자 수에 해당하는 2개의 판결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과학텍스트와 예술텍스트의 경우, 과학과 예술학술지에서 각각 5개의 텍스트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3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각각 5개의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난이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텍스트 중 ‘상하’(7-8)수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문항은 연구1.1과 마찬가지로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연구 1.2

35) 민사 93가단65895 (2436자), 1998. 9.17. 선고 1998가합290 (2714자), 2008.11.25. 선고 2007가단 23745 (2413자), 민사 2010가단5041 (2688자)

## 결 과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9, 표준편차 1.3)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3.2, 표준편차 1.1) 과학 텍스트(평균 3.1, 표준편차 0.9)와 예술 텍스트(평균 3.2, 표준편차 1.1) 보다 쟁점의 명확성에 대한 응답 점수가 낮았다.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3.4%로 과학텍스트(37.7%) 보다는 높았지만 예술텍스트(47.2%)와 2006년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49.1%) 보다는 낮았다. 또한 ‘그렇지 않다 및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006년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6%)(그림 7 참조).

텍스트의 ‘간결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3.0, 표준편차 0.6)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9, 표준편차 0.1)

와 과학 텍스트(평균 2.5, 표준편차 0.9)도 더 간결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예술 텍스트(평균 3.5, 표준편차 0.8) 보다 간결성에 대한 응답점수가 낮았다. 간결성에 대해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예술텍스트(36.8%)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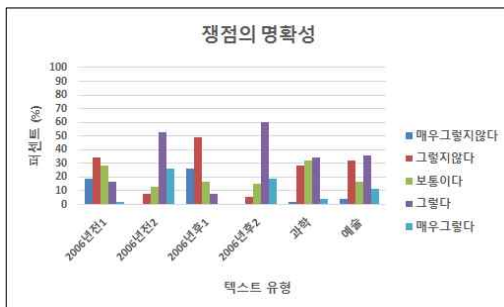


그림 7.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 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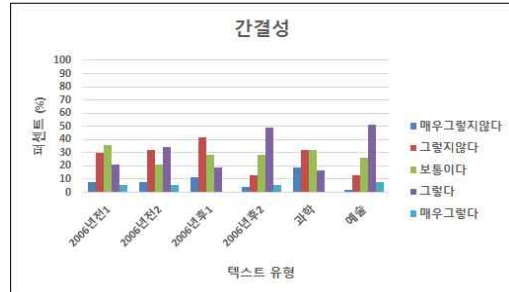


그림 8. ‘간결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36.8%)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8, 표준편차 0.9)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8, 표준편차 1.2) 보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지만, 과학 텍스트(평균 2.9, 표준편차 1.0)와 예술 텍스트(평균 3.9, 표준편차 0.8) 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응답 점수가 낮았다. 특히,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과학텍스트(45.3%)가 가장 높았으며, 2006년 작성된 판결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8%). 특히,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48.1%)과 2006년 이후에 작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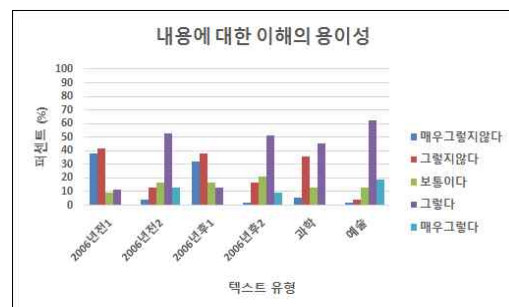


그림 9.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판결문(44.3%) 모두 과학(41.5%)과 예술텍스트(5.7%) 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 및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그림 9 참조).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9, 표준편차 0.9)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3.2, 표준편차 0.5), 과학 텍스트(평균 3.3, 표준편차 1.0)와 예술 텍스트(평균 4.1, 표준편차 0.6) 보다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응답 점수가 낮았다.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낮았으며, ‘그렇지 않다 및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67.9%)은 2006년 전에 작성된 판결문(25.5%), 과학텍스트(26.4%) 그리고 예술(0%) 보다 높았다(67.9%)(그림 10 참조).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3.5, 표준편차 0.2)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1, 표준편차 0.5) 보다 문장길이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과학 텍스트(평균 3.6, 표준편차 1.0)와 예술 텍스트(평균 3.7, 표준편차 1.0) 보다 문장길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 점수가 낮았다.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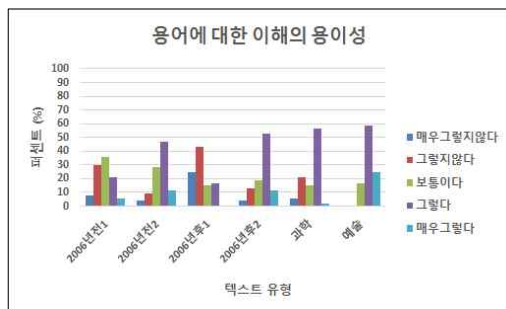


그림 10.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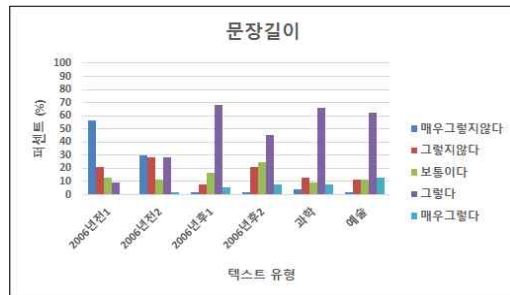


그림 11.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2006년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63.2%)이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19.8%)보다는 높았지만, 과학텍스트(73.6%)와 예술텍스트(75.5%) 낮았다(그림 11 참조).

반면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3.7, 표준편차 0.0)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평균 2.7, 표준편차 0.0) 과학 텍스트(평균 3.5, 표준편차 0.9)와 예술 텍스트(평균 3.6, 표준편차 0.9) 보다 단락길이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74.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술텍스트(66.0%)가 높았으며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32.1%)이 가장 낮았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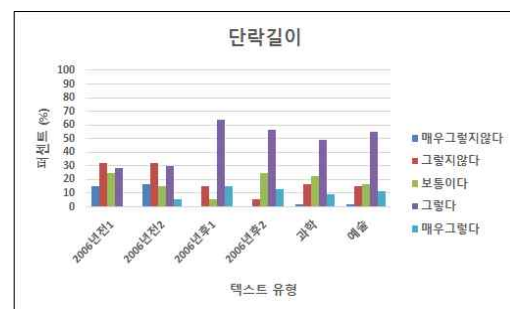


그림 12.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민사판결문과 일반텍스트 비교

표 2. 민사판결문의 수정사항에 관한 평균 응답

민사판결문에 대한 수정사항	그렇다(N/%)	아니다(N/%)
쟁점이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7(32.1)	36(67.9)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6(86.8)	7(13.2)
용어가 좀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36(67.9)	17(32.1)
문장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43(81.1)	10(18.9)
단락길이 좀 더 짧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37.7)	33(62.3)

민사판결문의 수정방향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용어가 좀 더 쉬워져야 한다’, ‘문장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내용:  $\chi^2(1)=28.7, p<.001$ ; 용어:  $\chi^2(1)=6.8, p<.01$ ; 문장길이:  $\chi^2(1)=20.6, p<.001$ ). 반면에 ‘쟁점이 좀 더 명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8, p<.01$ ).

정리하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이 2006년 이전에 작성된 민사판결문보다 더 간결하고, 문장길이가 단락길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이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 보다 쟁점의 명확성과 내용 및 용어에 대해 이해가 더 쉬워졌다는 의견이 적었다. 더불어 민사판결문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 내용과 용어가 좀 더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장길이가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민사판결문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 법관세미나’에서는 민사판결문의 작성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는 보다 세부적으

로 민사판결문의 이해도 및 가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관세미나에서 제시된 작성방향을 반영한 민사판결문과 수정 전 민사판결문, 신문사설, 과학텍스트, 그리고 음악텍스트를 비교하였다.

## 연구 2

### 방법

#### 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 재학생 80(남자: 58(72.5%), 여자: 22(27.5%)명 중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10명)을 제외한 70명(남자: 53(75.7%), 여자: 17(24.3%))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자료

연구2에서는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 법관세미나에서 제시된 수정 전 민사판결문과 수정 후 민사판결문<sup>36)</sup> 그리고 신문사설<sup>37)</sup>, 과

36) 간결한 민사판결서를 위한 체제와 문장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1) 법관세미나 자료, 사법연

학과 음악텍스트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텍스트에 대한 ‘최종 난이도’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 과

수정 후 판결문(평균 4.1, 표준편차 0.6)은 수정 전 판결문(평균 3.5, 표준편차 0.8), 사실(평균 4.0, 표준편차 0.6) 과학텍스트(평균 3.6, 표준편차 0.8) 그리고 음악텍스트(평균 2.7, 표준편차 0.9)보다 더 명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수정 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50%였고,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90%로 가장 높았다.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사실(85%), 과학텍스트(62.5%) 그리고 음악텍스트(17.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텍스트의 간결성에 대해, 수정 후 판결문(평균 3.8, 표준편차 0.7)은 수정 전 판결문(평균 2.0, 표준편차 0.8), 과학텍스트(평균 3.1, 표준편차 0.9) 그리고 음악텍스트(평균 2.8, 표준편차 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간결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수정전:  $p < .001$ ,  $t(39) = 9.4$ ; 과학:  $p < .001$ ,  $t(39) = 6.4$ ; 음악:  $p < .001$ ,  $t(39) = 3.6$ ), 사실(평균 4.2, 표준편차 0.7)보다는

수원, 2011.

37) 신문사설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 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텍스트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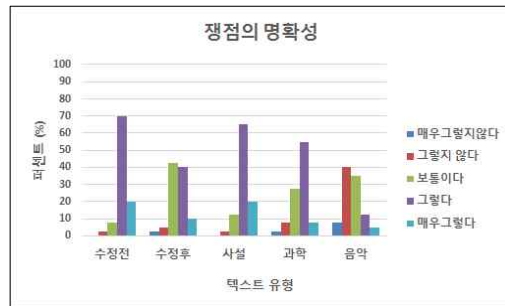


그림 13. '쟁점의 명확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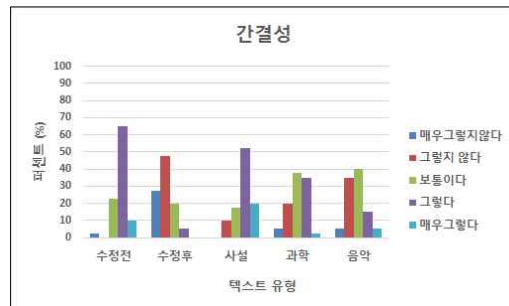


그림 14. '간결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75%), 수정 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낮은 (5%)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수정 후 판결문(평균 3.3, 표준편차 0.9)은 수정 전 판결문(평균 1.8, 표준편차 0.7), 과학텍스트(평균 2.6, 표준편차 0.9) 그리고 음악텍스트(평균 3.2, 표준편차 0.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간결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수정전:  $p < .001$ ,  $t(39) = 9.4$ ; 과학:  $p < .001$ ,  $t(39) = 6.4$ ; 음악:  $p < .001$ ,  $t(39) = 3.6$ ), 사실(평균 4.2, 표준편차 0.7)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후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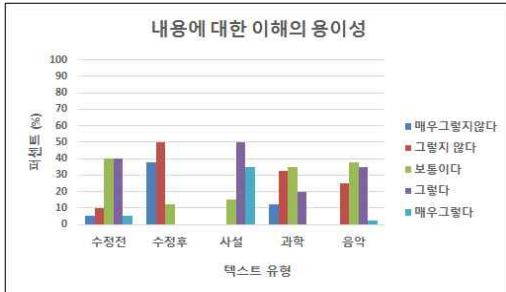


그림 15.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85%)이 수정 전 판결문(0%), 과학텍스트(20%) 그리고 음악텍스트(37.5%)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 보다는 높았지만, 사실(85%)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용어가 쉬운지'에 대한 질문에 수정후 판결문(평균 2.9, 표준편차 0.9)은 수정전 판결문(평균 1.9, 표준편차 0.9), 그리고 음악테스트(평균 3.3, 표준편차 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용어가 쉽다는 결과가 나왔으나(수정전:  $p < .001$ ,  $t(39) = 6.2$ ; 음악:  $p < .001$ ,  $t(39) = 6.9$ , 사실(평균 4.2, 표준편차 0.7)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용어가 쉽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p < .001$ ,  $t(39) = 11.450$ ).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의견

(25%)로 수정 전 판결문(7.5%) 보다는 높았지만, 사실(95%)과 음악텍스트(45%)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수정후 판결문(평균 3.7 표준편차 0.8)은 수정전 판결문(평균 2.2, 표준편차 1.0), 과학텍스트(평균 3.5, 표준편차 0.8) 그리고 음악테스트(평균 3.4, 표준편차 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문장 길이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수정전:  $p < .001$ ,  $t(39) = 7.4$ ; 과학:  $p < .001$ ,  $t(39) = 6.8$ ; 음악:  $p < .001$ ,  $t(39) = 5.3$ ), 사실(평균 4.2, 표준편차 0.7)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장 길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p < .001$ ,  $t(39) = 7.5$ ).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는 응답(72.5%)이 수정 전 판결문(15%) 보다는 높았지만, 사실(8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수정후 판결문(평균 3.9 표준편차 0.7)은 수정전 판결문(평균 3.0, 표준편차 1.0), 과학텍스트(평균 3.7, 표준편차 0.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단락 길이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수정전:  $p < .001$ ,  $t(39) = 5.0$ ; 과학:  $p < .001$ ,  $t(39) = 3.9$ ), 사실(평균 4.2, 표준편차 0.7)보다는 문장 길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p < .001$ ,  $t(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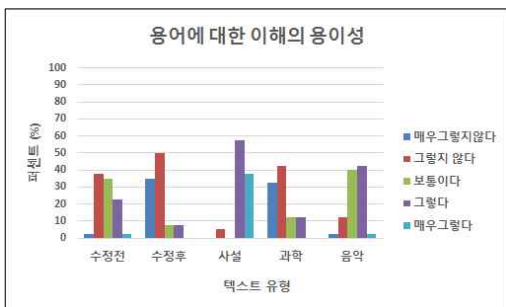


그림 16.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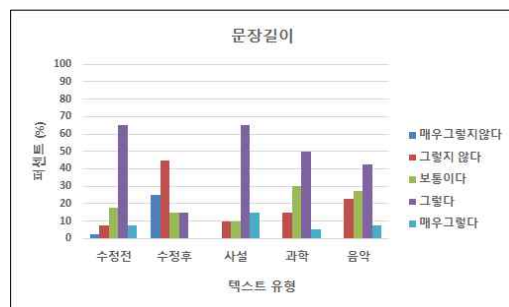


그림 17. '문장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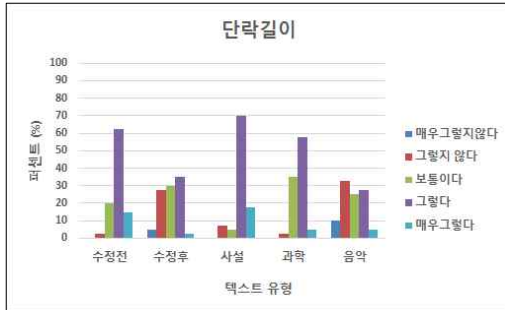


그림 18. '단락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수정 전, 수정 후 민사판결문 그리고 일반텍스트 비교

4.8). 수정 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의 응답(77.5%)은 수정 전 판결문의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37.5%) 보다는 높았지만, 사실(87.5%)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참조).

끝으로 5개의 텍스트의 '최종난이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정전 판결문이 수정후 판결문보다 최종난이도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수정전 판결문은 사실과 과학텍스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최종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했으며(사실:  $p < .001$ ,  $t(39)=6.8$ ; 과학:  $p < .001$ ,  $t(39)=3.7$ ), 수정후 판결문은 사실과 음악텍스트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최종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사실:  $p < .001$ ,  $t(39)=9.5$ ; 음악:  $p < .001$ ,  $t(39)=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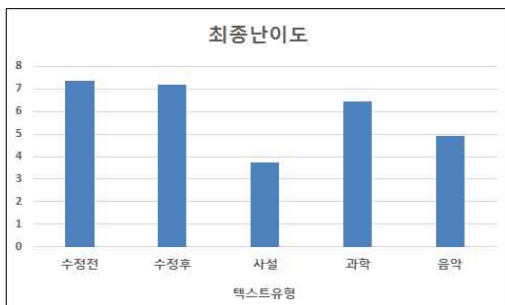


그림 19. 텍스트에 대한 최종난이도 평가결과

(그림 19 참조).

## 논 의

형사판결문의 경우,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은 2006년 전에 작성된 판결문과 다른 텍스트들 보다 쟁점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내용과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다고 응답했다. 문장과 단락 길이에서도 2006년 이후 판결문이 예전 판결문보다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과학과 예술 텍스트의 문장 및 단락 길이에 비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게 나왔다. 이는 그 동안의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실효적이었으나, 문장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여전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떨어져 있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판결문의 경우,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이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과 예술텍스트 보다 쟁점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텍스트와 2006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이 보다 간결하지만 예술텍스트 보다는 문장이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이전 판결문보다 이후의 판결문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반면, 과학텍스트와 예술텍스트에 비해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에 쓰인 용어가 그 이전의 판결문과 과학 및 예술텍스트에 비해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끝으로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이 이전 작성된 판결문 보다 문장 길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단락



길이의 적절성에서는 2006년 이후에 작성된 판결문이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1의 결과는 앞으로 판결문 작성에서 쟁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문장길이를 일반인이 읽기 쉽게 적절한 수준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1년도 재판이론과 실무 법관 세미나에서 제시된 수정 전 민사판결문과 수정 후 민사판결문을 다른 텍스트들과 비교한 연구2의 결과, 수정된 판결문이 수정 전 판결문보다 쟁점이 더 명확하며, 간결하고,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용이하며, 용어가 더 이해하기 쉽고, 문장길이와 단락길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수정 후 판결문이 여전히 사실보다는 내용과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적었으며, 문장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사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사판결문의 내용과 용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고 적절한 문장과 단락 길이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들이 법령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령용어 자체가 일반 언어와는 다른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이며,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판결서 간이화 노력이 진행된 2006년도 이후 판결문의 이해도가 그 이전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문장의 길이나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법령용어에 대한 어려움 뿐 만이 아니라 비법령용어(예. ‘주문’, ‘가납’ 등)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도 언급하였다. 전문용어로서의 한

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판결문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판례 형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구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배심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의 이해도 향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판결문의 복잡한 구조와 가독성 저해의 원인 중 하나로 법원 내의 판결서 작성 문화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이 2013년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결문 적정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97.4%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sup>38)</sup> 특이할 사항은 선배 법관, 재판 당사자의 평가·인식을 염려해 판결문을 일단 길게 쓰고 보자는 생각이 전체 응답의 67.9%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급심에 대한 보고적 기능에 있어 지나친 부담감 버리기’(229건), ‘판결문을 근거로 하급심 판사를 평가하는 상급심 판사의 인식변화’(227건)가 가장 많았다.

물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대학생이라는 특정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과 무작위로 추출된 몇 개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국민 전체의 ‘판결문의 가독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판결문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판결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38)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

12/0702000000AKR20140412016600004.HTML

더불어 본 연구에서 판결문과 비교한 ‘과학’과 ‘예술’텍스트는 ‘상하’(7-8)수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선택하였지만<sup>39)</sup>, 비교텍스트의 수준에 따라 가독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혹은 낮게 평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판결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안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대상 판결문 수를 늘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텍스트에 대한 기억과제 등을 통해 각각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실험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결문의 작성 주체인 판사들의 관점에서 가독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서로 간 인식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법학과 국어학 그리고 언어학 등 관련 학문들 간의 학제 간 연구와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법부 내에서의 판결문 작성 문화와 인식 변화 등 자구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회제출법안처리현황 위원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통계** (2014년 9월30일 기준).

김광해 (2000).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39) 구체적인 텍스트 선별과정은 실험방법 참고.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8집**, p. 271-297.

김기선 (20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정비기준 2007 중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p. 1.

김문현 (2005).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집: 제9권 제2호, p. 1-26.

김종두 (2000).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 19.

김현희 (2012).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 법제처.

대법원 1991. 2. 7. 송무심의 제9호, 대법원 1998. 8.20. 송무심의 0410-132.

레드 로벨, 이승훈 역 (1939/2014).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후마니타스, p. 189.

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2001).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한국법제연구원.

박우동 (198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본인소송과 그 문제점**, 한국사법 행정학회 / 사법행정, p. 91.

배종대 (1995). **형법총론 개정판**, 홍문사, p. 40-51.

보그란데, 드레슬러 저. 김태옥, 이현호 공역 (1982/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사법연감 (2012).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2006).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p. 11.

오경미 (2010). **법관세미나 간결한 민사판결서를 위한 체제와 문장 재판이론과 실무(1)**, 사법연수원.

이은희 (2009). **텍스트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

- 방향, 텍스트언어학, p. 38.
- 이형근 (2007). 미국의 본인소송의 증가와 대응 방안 연구, 법조: 제56권 제1호, p. 290-304.
- 이훈동, 이주일 (2004). 현행관련 법령상의 법령 용어 및 문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9.
- 장소원 (2009).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제27집, p. 1-29.
- 카우프만 아서, 심헌섭 (1984). 서울대학교법학: 58·59합, p. 203-216 (p. 206 재인용).
- 한국법제연구원 (2000). 법령순화정비사례(1).
- 한국법제연구원 (2002).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00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 Berent, Irwin (2010). Background: Plain Writing Legislative History, 2007-2010, Plain Writing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www.plainlanguage.gov/plLaw/>.
- Joseph, K. (1994-1995). Answering the Critics of Plain Language, *The Scribes Journal of Legal Writing* Vol. 5, 53-60.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515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5151.html) 배심원 설문조사 분석 (2007.9.10. 시행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 사법정책실)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2/0702000000AKR20140412016600004.HTML>
- 1 차원고접수 : 2015. 02. 21.  
심사통과접수 : 2015. 03. 20.  
최종원고접수 : 2015. 03. 23.

## A Research on the readability of sentencing

**Ko Min-Jo**

**Park Joo-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We use language to define laws and norms which serve to keep our society safe. However, the people who are to obey the laws, are often reported in studies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laws because of legal jargon and expressions.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nations have long been aware of such difficulties that the general public faces, and have sought to promo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legal texts. These efforts have recently started in Korea as well.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various attempts to write more readable legal texts both in Korea and abroad. We compared 'written judgments including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and 'scientific and artistic texts including jargons' in 6 areas: 'clarity of the issue', 'brevity', 'ease of understanding the content', 'ease of understanding the terms',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the sentences', and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paragraphs', for th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ttempts to improve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were effective; however, the subjects still 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sentences and paragraphs as inferior to other texts. Therefore, more systematic and specific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in this area, and we should conduct empirical studi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changes. Possible suggestions were propo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Key words* : *sentencing readability, legal text, legal language, legal sentence*